#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1

발의연월일: 2020. 6. 18.

발 의 자 : 홍석준 • 이철규 • 강기윤

김석기 · 김용판 · 정희용

추경호 · 정진석 · 강대식

김상훈 • 류성걸 • 박성중

조경태 의원(13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헌혈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혈액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시급함. 특히, 코로 나19 확산으로 수혈용 혈액 재고가 하락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헌혈 참여가 필요한 상황임.

의료 현장에서 혈액 부족으로 수술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회헌혈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지속적인 헌혈 참여 확대 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추진이 필요함.

이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다회헌혈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 헌혈포장 수여 및 헌혈명문가 선정을 통해 헌혈 동참 증진 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 권장을 위해 다회헌혈자를 대상으로 헌혈포 장을 수여함(안 제4조제3항).
-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 동참 증진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헌혈 명문가를 선정함(안 제4조제4항).
- 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등 다회헌혈 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함(안 제4조의5 신설).

#### 법률 제 호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 권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다회헌혈자를 대상으로 헌혈포장을 수여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 동참 증진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헌혈 명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5(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회헌혈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초청
- 2.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 3.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용료·입장료·수수료 등의 감면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우 및 지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헌혈 권장 등) ①・② (생	제4조(헌혈 권장 등)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 권
	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다회헌혈자를
	대상으로 헌혈포장을 수여할
	<u>수 있다</u> .
<u>&lt;신 설&gt;</u>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 동
	참 증진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을 위하여 헌혈 명문가를 선정
	<u>할 수 있다.</u>
<u>③</u> (생 략)	<u>⑤</u> (현행 제3항과 같음)
<u>&lt;신 설&gt;</u>	제4조의5(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다회헌혈자에게 다음 각 호
	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
	관하는 행사 초청
	2.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
	<u>면</u>
	3.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
	는 바에 따른 사용료·입장료·

<u>수수료 등의 감면</u>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예우 및 지원